

업무 방침:		
범죄 피해자		
업무 방침 코드:	발효일:	교차 참조:
VIC 1	2023년 12월 18일	ALT 1 CHI 1 INF 1 IPV 1 RES 1 SEX 1 VUL 1 YOU 1.4

범죄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일은 사법 제도 관계자들이 하는 중요한 직무이다. 검사와 전문 실무진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와 경찰, 원주민 지원 단체에 마련되어 있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게 하여야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에게 증언 편의와 사건 관련 정보([범죄 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VOCA\)](#)) 및 연방 [캐나다 피해자 권리 장전\(Canadian Victims Bill of Rights\)](#)가 제공됨을 알려야 한다.

이 업무 방침에서는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와 관련한 지침을 검사에게 제공한다. 검사는 다음을 포함한 BC 소추 서비스부(BC Prosecution Service, BCPS)의 다른 업무 방침에 있는 피해자 관련 지침도 고려하여야 한다.

- *아동 피해자와 증인(Child Victims and Witnesses)*([CHI 1](#))
-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IPV 1](#))
- *해결 논의(Resolution Discussions)*([RES 1](#))
- *성범죄 - 성인 피해자(Sexual Offences – Adult Victims)*([SEX 1](#))
- *취약한 피해자와 증인(Vulnerable Victims and Witnesses)*([VUL 1](#))

피해자 및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피해자는 [형법\(Criminal Code\)](#) 제2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제2.2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다.

VOCA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사법 제도의 구조와 운용, 피해자 서비스, [정보의 자유 개인 정보 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범죄 상해](#)

보상법(Criminal Injury Compensation Act), VOCA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경찰에게서 이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검사가 알게 되면 검사나 전문 실무진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년 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에 따라, 또한 수사나 기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는 피해자에게 다음을 조언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의 처분
- 피고인의 최종 처분이나 형량, 석방 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예정된 법원 출두
- 피고인의 최종 처분이나 형량, 석방 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각 출두의 결과

대부분 중범죄의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가 유죄 답변 합의에 관한 정보를 받았는지 물을 의무가 있다(제606조 (4.1)항 및 (4.2)항).

피고인이 석방되면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는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석방 조건 및 해당 조건의 향후 변경 내용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

검사는 피해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에 피해자에 관한 정보(예: 연락처, 피해자 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검사는 혐의 및 기소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의 정보 요청(Information Requests from Third Parties)*([INF 1](#)) 업무 방침의 지침대로 피해자와 피해자 서비스 프로그램에 제공할 수 있다. 검사는 *소년 사법*에 따른 제한 사항이나 보석 적부심(제517조), 예비 심문(제539조), 배심 재판(제648조)에서 내려진 법원의 비공개 명령에 따른 제한 사항 또는 *비공개* 소송 절차에 따른 제한 사항이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증언 편의

검사는 증인이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언제나 증언 편의 제공 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제486조, 제486.1조, 제486.2조, 제486.3조). 검사는 피해자에게 증언 편의가 제공되며 그러한 편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드문 경우, 검사는 제486.31조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소송 절차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익명성 명령을 신청하거나 제486.7조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는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신청을 하든 검사는 그 전에 지역 검사나 국장 또는 차석 지역 검사나 부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개 금지

검사는 제1심에서 제 486.4조나 제486.5조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나 증인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나 증인이 공개 금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검사는 신청하여 명령이 내려지면 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나 증인에게 명령의 존재를 알리고, 피해자나 증인이 명령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지 알아내며, 피해자나 증인에게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제486.5조 (8.2)항). 피해자가 공개 금지 명령의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독립적인 법적 조언을 구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검사는 다른 피해자나 증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명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 운용에 반하지 않는 한 해당 금지의 변경이나 취소 신청에 동의하여야 한다. 검사는 신청에 반대하기 전에 행정 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

검사는 모든 피해자가 해당 범죄의 영향과 관련하여 피해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할 타당한 기회를 반드시 갖게 하여야 한다(형법 제722조, VOCA 제4조, CVBR 제15조). 검사는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검토하여 채택할 수 없는 소재가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¹

피해자가 양형 심리 때까지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작성하고자 하면 검사는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연기 신청을 하여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검사는 적절한 경우 휴정 신청을 할 수 있다(제722조 (3)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법원에 어떻게 제공하고자 하는지 묻고, 실행 가능한 경우 양형 심리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다음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허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 서면 제출
- 증언 편의를 받아 양형 심리 시 낭독
-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방식

원상회복

검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실과 피해에 대하여 법원이 가해자를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주도록 요청할 권리에 관한 정보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CVBR 제16조, 형법 제737.1조 (2)항).

공동체 피해 영향 진술서

¹ R v Bremner, 2000 BCCA 345 at paras 22-23, 28

공동체 피해 영향 진술서는 해당 목적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경우 양형 심리에서 채택될 수 있다(제722.2조 (1)항). 공동체 피해 영향 진술서 소관 부서는 공공 안전 치안부(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olicitor General)이다.

항소

BCPS가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하거나 항소 통지를 받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보 수신 또는 소송 절차 참석에 대한 피해자의 관심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소송 절차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검사는 다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 피해자가 보석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항소 서류 중인 보석 신청 날짜
- 보석 신청 결과 및 적절한 경우 명령서 사본 제공
- 항소 날짜 및 항소의 최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거나 항소인의 보석 자격, 운전 권한 또는 보호 관찰 명령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출두 날짜
- 새로운 재판이 명령되는 경우 새로운 재판을 진행할 검사 사무실의 연락처

원주민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물론 수많은 정부 위원회와 보고서는 원주민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공공연한 인종 차별주의적 태도의 결과이든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관행의 결과이든 형사 사법 제도의 모든 부분에까지 뻗어 있음을 인정했다.

캐나다에서 자행된 식민주의, 강제 이주, 기숙 학교의 역사는 원주민의 상대적인 저학력, 저소득, 높은 실업률, 높은 약물 사용률과 자살률, 높은 수감률로 이어졌다.² 원주민 피해율도 특히 원주민 여성과 소녀의 경우는 비원주민 여성과 소녀보다 유의하게 더 높다.³

캐나다 원주민에게 영향을 미친 식민주의 잔재의 결과는 "원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고유의 제도적 및 배경적 요인과 더불어 원주민의 근본적으로 다른 문화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기인한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⁴

캐나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원주민, 특히 원주민 여성, 소녀, 성 노동자들이 여성에 대한 높은 성폭력 비율을 포함하여 심각한 불의를 견뎌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 ... [우리의] 형사 사법 제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참여자는 타당한 조치를 취하여 원주민, 특히 원주민 여성과 성

² *R v Ipeelee*, 2012 SCC 13

³ *Victimization of Aboriginal People in Canada, 2014*, Statistics Canada, 2016

⁴ *Ewert v Canada*, 2018 SCC 30 at paras 57-58; *R v Barton*, 2019 SCC 33 at paras 198-200, also [BC First Nations Justice Strategy](#), February 2020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편향, 편견, 고정 관념을 정면으로 다루어야 한다.”⁵

검사는 원주민 여성이나 소녀가 피해자로 연루되어 있는 사건은 공익성이 강하여 기소에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경우, 특히 전통이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원주민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기소 대안- 성인(Alternatives to Prosecutions – Adults)*([ALT 1](#)) 및 *소년 사법- 재판 외 조치(Youth Criminal Justice Act – Extrajudicial Measures)*([YOU 1.4](#)) 업무 방침에 따라 기소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검사는 원주민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지원책이 있는지 두루 알아보고 원주민의 고유한 전통, 법, 의식을 인식하여야 한다.

원주민 피해자는 식민주의나 지리적 고립의 영향으로 특히 취약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 적절한 피해자 서비스가 유익할 수 있다.

원주민 피해자가 연루된 재판에서 검사는 원주민에 대한 편견에 대응할 목적의 명시적 지침을 내려주도록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⁶ 검사는 또한 자신의 양형 견해가 우리 사회에서 원주민에게 가해지는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게 하여야 하며, 제718.04조 및 제718.201조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양형 심리에서 법원에 적절히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5 *R v Barton*, 2019 SCC 33 at paras 198 and 200

6 *R v Barton*, 2019 SCC 33 at paras 200-204